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9.29.(수)	상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021년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 현황 전달 및 수검 독려 차 공사 방문 시 감사의 표시로 1만원 상당의 바디워시를 홍보용 선물로 제공하였는데 해당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제1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한 금품등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 하였으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제18조제3항제7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요청자가 반환 의사를 밝혀 해당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함.

2021년 9월 29일

행동강령책임관

강종훈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1.9.30.(목)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일)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외부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는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 문의

상담 결과

1.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의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함.
 2. 외부강의등 출강 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제22조의3에 의거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업무분장 등에 명시되거나 부서장이 업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경우)과 관련있는 경우에는 출장처리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함.
 3. 아울러, 외부강의등 1시간당 상한액 400천원 및 1시간 초과 시 상한액 600천원을 안내하여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함.

2021년 9월 30일

행동강령책임관

강종훈

